(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국제특허출원의 출원공개공보(A)

(51) Int. CI.⁶ B65D 50/04 (11) 공개번호 특1996-0703086

(43) 공개일자 1996년06월19일

(21) 출원번호 특 1995-0705723 (22) 출원일자 1995년 12월 15일 번역문제출일자 1995년 12월 15일 (86) 국제출원번호 PCT/GB 94/001277 (87) 국제공개번호 W0 94/029185 (87) 국제공개일자 (86) 국제출원출원일자 1994년06월14일 1994년 12월22일 FP 유럽특허 :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및 리히텐스타인 독일 덴마크 (81) 지정국 스페인 불란서 영국 그리스 아일랜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 덜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국내특허 : 호주 브라질 카나다 일본 대한민국 노르웨이 뉴질랜드 미 9312275.2 1993년06월15일 영국(GB) (30) 우선권주장 (71) 출원인 더 웰컴 화운데이션 리미티드 그레이엄 브리레톤 영국, 런던 엔더블유1 2비피, 유스톤 로드 160, 유니콘 하우스 (72) 발명자 브라이언 레슬리 오그덴 영국, 켄트 디에이 15에이에이치, 다트포드, 템플 힐 피터 앨버트 휘팅 영국, 켄트 디에이1 15에이에이치, 다트포드, 템플 힐 (74) 대리인 이상섭, 나영환

심사청구 : 없음

(54) 용기 마개(CAP FOR ACONTAINER)

요약

본 발명은 봉인 마개에 관한 것으로서, 그 마개는 나사가 형성된 마개 형태의 내측부(1)와, 상기 내측부 와의 사이에 위치한 탄성 편향 수단(3)에 의해 제1결속 위치로 편향된 외측부(2)와, 내측부(1)에 위치하 여 외측부(2)에 형성된 개구부(8)로 수납되는 돌출부(4)와, 외측부(2)의 외측 상단면에 부착되어 개구부 (8)를 덮는 봉인부재(6)를 포함한다. 상기 마개를 용기로부터 최초 개봉할 때, 외측부(2)는 편향력에 대 항하여 제2풀림 위치로 이동하고, 상기 돌출부(4)는 상기 개구부(8)는 수납되어 상기 개구부(8)를 통과하 여 돌출하며, 그에 따라 봉인 부재(6)의 적어도 일부분이 파열된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용기 마개(CAP FOR ACONTAINER)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내측부와 외측부로 분리된 본 발명에 따른 마개의 단면도.

제2도는 본 발명에 따른 봉인 부재의 평면도,

제3도는 용기 마개에 부착되기 전의 봉인부재 스트립을 도시한 평면도.

본 내용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 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나사가 형성된 개구부를 구비한 저장 용기용 마개로서, 나사가 형성된 마개 형태의 내측부(1)와, 상기 내측부와의 사이에 위치한 탄성 편향 수단(3)에 의해 제1결속 위치로 편향된 외측부(2)와, 내측부(1)에 위

지하여 외측부(2)에 형성된 개구부(8)로 수납되는 돌출부(4)와, 외측부(2)의 외측 상단면에 부착되어 개구부(8)를 덮는 봉인 부재(6)를 포함하며, 상기 마개를 용기로부터 최초 개봉할 때, 외측부(2)는 편향력에 대항하여 제2풀림 위치로 이동하고, 상기 돌출부(4)는 상기 개구부(8)로 수납되어 상기 개구부(8)를 통과하여 돌출하며, 그에 따라 봉인 부재(6)의 적어도 일부분이 파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봉인 마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봉인 부재(6)는 종이 필름 또는 라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봉인 마개.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개구부(8)를 덮는 상기 봉인 부재(6)부분은 상기 개구부(8)를 덮지 않는 다른 부분보다 약화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봉인 마개.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약화된 부분은 서로 연결된 천공부(9) 형태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봉인마개.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천공부 형태는 다수의 "S-자형" 천공부(9)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봉인마개.

청구항 6

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봉인 부재는 다수의 반경방향 슬릿(12)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봉인 마개.

청구항 7

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마개는 의약품 용기용 마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봉인 마개.

청구항 8

제2항 내지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봉인 부재는 용기 마개에 이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봉인 마개.

청구항 9

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마개를 장착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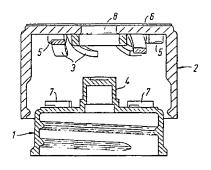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용기는 의약품 용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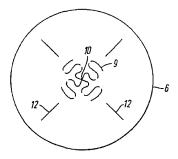
※ 참고사항 :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